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-20호

「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1일

강릉시 의회의장

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및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 정비
- 나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(안 제2조)
- 다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정비(안 제5조)
- 라.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마. 카메라 등 기계장치 점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9조제6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/☎033-640-4034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tjvy9207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조례 제 호

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”를 “강릉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“공중화장실”이란”을 “사용하는 용어의 뜻은”으로, “다른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적용의 범위)”를 “(적용 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 제3조제2호의 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설치·관리자의 책무)”를 “(시장의 책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(이하 “공중화장실등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,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·관리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.

1.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
2.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
3.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,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

2.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. 다만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관리자로 한다.

가.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등

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중화장실”을 “시장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”을 “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관리인의 교육)”을 “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제6조”를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6조”로, “수립하여 교육을 실시”를 “수립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직접 실시 하기”를 “직접 실시하기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공중화장실”을 “공중화장실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”를 “(공중화장실등의 유지·

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중화장실”을 “공중화장실 등”으로, “화장실을 항상”을 “공중화장실등을 항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청결히 유지되도록 수시로 청소

6.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

제10조 중 “공중화장실”을 “공중화장실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6조”를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</u></p>	<p><u>강릉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·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<u>공중화장실</u>”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2조에 <u>따른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<u>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-----</u> ----- <u>따른다.</u></p>
<p>제3조(<u>적용의 범위</u>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법 제3조제2호에서 “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·제7호·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·</u></p>	<p>제3조(<u>적용 범위</u>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3조제2호의 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”이란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과 같은</u></p>

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”이라 함은 「관광진흥법」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승인된 관광지 로써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.

③ (생 략)

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5조(설치기준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”영“이라 한다) 제6조제3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중화장실의 설

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·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(이하 “공중화장실등”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,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② 법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·관리한다.

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

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와 배수구 등을 설치
2. 방수를 위하여 바닥과 내벽에 타일이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실시
3. 건축물의 신축·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
4. 장애인용 화장실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을 따른다.

<신 설>

한다.

1.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
2.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
3.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,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

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

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공중 화장실등
2.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. 다만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

중화장실등의 설치·관리자로 한다.

가.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
공기관의 공중화장실등

나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강릉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·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관리인의 교육) ①시장은 「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-----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-----

제7조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

① -----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-----

리인(이하 “관리인”이라 한다)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편의용품 등의 비치) 공중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. 다만,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유지관리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략)

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하루 3회 이상 청소

수립-----
--.

② ----- 직접 실시하기-----

-----.

제8조(편의용품 등의 비치) 공중 화장실등-----

----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공중화장실등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등-----
---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----

-----.

- 1. 청결히 유지되도록 수시로

<p>2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10조(관리카드의 비치) <u>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</u></p> <p>[본조제목개정 2011.01.12.]</p> <p>제16조(유료화장실의 신고) ① <u>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</p>	<p><u>청소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수시로 점검</u></p> <p>제10조(관리카드의 비치) <u>공중화장실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6조(유료화장실의 신고) ① -- ----- ----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법 규 명 :

성명(단체명) :

주 소 :

연 락 처 :

제·개정안 내용	의 건	비 고